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마감재 등은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을 확보하도록 건축자재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당연 불연재료에 얇은 두께의 재료를 도장·부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부착 재료 등이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해당 재료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

3. 주요내용

가. 당연 불연재료에 일부 재료를 부착·도장 등을 하는 경우 난연성능 시험 방법 개정 (제24조제8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당연불연재에 두께 5mm 이하의 다른 재료를 도장·부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과 달리 도장·부착 등의 두께가 얇아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도장·부착 재료 등의 경우 재료가 난연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다른 재료(두께 5mm를 초과할 수 없음)를 도장, 도금, 부착 등을 하여 공장에서 제작되는 경우 하나의 재료로 보고 시험하거나 도장, 도금, 부착 등을 한 다른 재료(두께 1mm를 초과할 수 없음)를 제외하고 시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마감재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4조제8항에 따라 마감재료 성능시험을 신청하고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시험을 신청한 자가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시험기관에 요청할 경우 개정된 조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⑦ (생략)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⑧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단서 신설>	2. ----- ----- ----- ----- ----- <u>.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다른 재료(두께 5mm를 초과할 수 없음)를 도장, 도금, 부착 등을 하여 공장에서 제작되는 경우 하나의 재료로 보고 시험하거나 도장, 도금, 부착 등을 한 다른 재료(두께 1mm를 초과할 수 없음)를 제외하고 시험할 수 있다.</u>
⑨ ~ ⑫ (생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8